회의소집일	2021.02.03.

2021년 정기이사회 회의록

- 총 제189차 -

【개최일시】 2021년 2월 19일(금) 16:00

【개최형식】 SNS 상, 카카오톡 (다자간 대화)단체방 개설

【참석인원】 이사 8명(정원 9명) / 감사 2명(정원 2명)

출석이사: Fr.황경원, 오혜경, 심점섭, 전재희, 김명근, 정태호, 김영주, Fr.김성훈 (8명)

출석감사: Fr.김한석, 김기선 (2명)

배 석: Fr.조용철(법인 부회장), Fr.하성용(사회사목국 부국장), 담당관8명

【의안상정】

제1호 의안 법인「감사보고서」승인 요청의 건

제2호 의안 법인 산하 직영·수탁 영·유아복지시설 2020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 요청의 건

제3호 의안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 2020년 사업총평가 및 세입·세출결산(안) 승인 요청의 건

제4호 의안 법인 산하 직영·수탁시설 영·유아복지, 아동시설(방과후교실어린이집) 2021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 요청의 건

제5호 의안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 2021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 요청의 건

제6호 의안 법인 산하「직영·수탁시설 운영규정」제2차 개정(안) 승인 요청의 건

제7호 의안 법인 산하 직영 결핵요양시설「희망의집」폐쇄(안) 승인 요청의 건

제8호 의안 법인 산하 직영 아동·청소년시설「성가정입양원」정원 변경(안) 승인 요청의 건

제9호 의안 법인 산하 직영시설 시설장 임면 승(추)인 요청의 건

제10호 의안 법인「임원」선임(안) 승인 요청의 건
-외부추천 감사 선임-

【보고 및 기타 토의 사항】

보고사항 1. 법인 산하 수탁시설 관련 보고-영유아복지분야 수탁 종결 등 현황 보고-

기타사항 1. 보건복지부「2021년 사회복지법인·시설관리안내」에 대한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의견 반영 등 조치에 대한 경과 보고

【폐회】

□ 개회 정족수 보고 및 개회 선언

의장은 오후 4시 30분 상임이사의 정족수 보고를 확인(다자간 메신저 대화창으로 확인) 후, 시작기도를 생략하고 정관 제19조 제2항 및 제21조 규정에 의거 본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으로 개회를 선언하다.

□ 의장 황경원 인사 말씀

새해에는 모든 임원분들과 대면 회의를 개최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나 아직도 지역사회 곳곳에서 코로나 19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반영하여 금번 법인의 정기이사회 또한 지난 임시이사회와 동일한 방식으로 'SNS 카카오톡 (다자간 대화)단체방' 을 활용하여 개최하게 된 점에 대하여 사전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두의 안전을 최우선해야하는 법인의 입장과 임원분들의 안전을 고려하고자 함이니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금번 정기이사회에서는 법인 감사보고서 승인 요청 등, 총 10건의 상정 의안을 심의·의결하고자 하며 각 의안에 대하여 임원분들의 적극적인 고견을 부탁드린다.

□ 전차 이사회의록 확인

의장은 출석이사에게 전차회의록에 대한 보완 수정할 부분의 유무를 묻고 출석이사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전차 회의록을 확정시키다.

의안심의

▮ 제1호 의안 : 법인 「감사보고서」 승인 요청의 건

◎ **의장 황경원** : 제1호 의안은 법인「감사보고서」 승인 요청의 건으로 법인의 김한석 감사님, 김기선 감사님께서 감사해주신 내용을 김기선 감사님께서 대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 김기선** : 법인「감사보고서」 "본인 등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의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로 종결되는 회계연도의 업무집행 내용과 2020년 회계에 속하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와 장부를 일반적인 감사 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업무집행 내용과 결산서는 정확하였으며, 그 회계처리는 적정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장부의 기장과 영수처리 장부의 잔고와 통장 잔고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보고를 마칩니다. (※ 별도자료: 「2021년 정기이사회 자료집-이하 '자료집'-」5면 참조)

[다자간 메신져 단체 대화방을 통하여, 김기선 감사께서 감사보고를 마치다.]

[의장] 법인의 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김기선 감사님과 김한석 감사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 임원분들께서는 제1호 의안에 대하여 특이사항이나 의견이 있다면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출석 이사와 감사에게 제1호 의안의 심의를 통하여 해당 의안에 문제점 및 특이 조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다. 이후, 의장은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청, 전원 원안 찬성으로 제1호 의안인 법인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며, 법인의 2020년 내부 회계 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김기선 감사님과 김한석 감사님의 노고에 재차(再次)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다.

▮ 제2호 의안 : 법인 산하 직영·수탁 영·유아복지시설 2020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 요청의 건

◎ 의장 황경원 : 제2호 의안인 법인 산하 직영·수탁 영·유아복지시설 2020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김성훈 상임이사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임이사 김성훈 : 제2호 의안인 법인 산하 직영·수탁 영·유아복지시설 2020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을 요청해온 시설은 총19개 시설로서 해당 의안은 사회복지팀 영·유아복지 담당의 1차 검토와 법인 회계 담당관의 2차 검토, 최종적으로 심점섭 이사님과 김기선 감사님의 3차 검토를 거쳐 수정·보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2020년 제1차~제3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이사회의 승인을 요청해온 법인 산하 수탁시설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법인사무국 부회장Fr. 조용철께서 보고드겠습니다. 임원분들께서는 이하 내용 및 자료집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총 19개 시설	수탁시설 영·유아복지시설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요청 시설 ➡ 총 1개 시설 수탁시설 영·유아복지시설 제2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요청 시설 ➡ 총 6개 시설 직영·수탁시설 영·유아복지 제3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요청 시설 ➡ 총12개 시설

◎ 부회장 Fr. 조용철 : 먼저, 2020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이사회의 승인을 요청해온 법인 산하 수탁시설 쌍문2동어린이집에 대하여 이하 내용 및 자료집을 참조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원분들께서는 해당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천원)

분야	구분	시 설 명	세 입				세 출				면
			2020년 예산(A)	2020년1차 추경예산(B)	증감(B-A) 금액	증감(B-A) %	2020년 예산(A)	2020년1차 추경예산(B)	증감(B-A) 금액	증감(B-A) %	
영유아 (1개)	수탁	쌍문2동어린이집	816,772	788,434	-28,338	-3.5	816,772	788,434	-28,338	-3.5	10

[다자간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하여, 법인사무국 부회장Fr. 조용철 의안 보고를 마치다.]

◎ 상임이사 김성훈 : 다음은 2020년 제2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이사회의 승인을 요청해온 법인 산하 수탁 6개 시설에 대하여 법인사무국 부회장Fr. 조용철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회장 Fr. 조용철** : 2020년 제2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이사회의 승인을 요청해온 법인 산하 수탁시설 6개 중 세부 설명을 요(要)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하 내용 및 자료집을 참조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원분들께서는 해당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천원)

분야	구분	시설명	세입				세출				면
			2020년1차 추경예산(A)	2020년2차 추경예산(B)	증감(B-A) 금액	증감(B-A) %	2020년1차 추경예산(A)	2020년2차 추경예산(B)	증감(B-A) 금액	증감(B-A) %	
영유아 (6개)	수탁	도곡어린이집	1,226,103	1,190,651	-35,452	-2.9	1,226,103	1,190,651	-35,452	-2.9	12
	수탁	동화나라어린이집	1,311,300	1,282,000	-29,300	-2.2	1,311,300	1,282,000	-29,300	-2.2	13
	직영	서초3단지어린이집	492,593	477,633	-14,960	-3.0	492,593	477,633	-14,960	-3.0	14
	수탁	송화어린이집	572,730	556,428	-16,302	-2.8	572,730	556,428	-16,302	-2.8	15
	수탁	연화어린이집	802,769	788,994	-13,775	-1.7	802,769	788,994	-13,775	-1.7	16
	수탁	온도어린이집	627,125	586,939	-40,186	-6.4	627,125	586,939	-40,186	-6.4	17

[다자간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하여, 법인사무국 부회장Fr. 조용철 의안 보고를 마치다.]

◎ **상임이사 김성훈** : 마지막으로 2020년 제3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이사회의 승인을 요청해온 법인 산하 직영·수탁 12개 시설에 대하여 이하 내용 및 자료집을 참조하여 법인사무국 부회장Fr. 조용철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회장 Fr. 조용철** : 2020년 제3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이사회의 승인을 요청해온 법인 산하 직영·수탁 12개 시설 중 세부 설명을 요(要)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하 내용 및 자료집을 참조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원분들께서는 해당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천원)

분야	구분	시설명	세입				세출				면
			2020년2차 추경예산(A)	2020년3차 추경예산(B)	증감(B-A) 금액	증감(B-A) %	2020년2차 추경예산(A)	2020년3차추경예산(B)	증감(B-A) 금액	증감(B-A) %	
영유아 (12개)	수탁	마천어린이집	1,056,336	949,092	-107,244	-10.2	1,056,336	949,092	-107,244	-10.2	19
	수탁	목동어린이집	1,028,251	1,042,142	13,891	1.4	1,028,251	1,042,142	13,891	1.4	20
	수탁	방배어린이집	450,589	454,812	4,223	0.9	450,589	454,812	4,223	0.9	21
	직영	베들레헴어린이집	290,348	301,064	10,716	3.7	290,348	301,064	10,716	3.7	22
	수탁	보미나어린이집	589,571	576,307	-13,264	-2.2	589,571	576,307	-13,264	-2.2	23
	수탁	성모어린이집	410,215	410,856	641	0.2	410,215	410,856	641	0.2	24
	수탁	예다움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536,591	523,240	-13,351	-2.5	536,591	523,240	-13,351	-2.5	25
	수탁	원당어린이집	669,973	666,362	-3,611	-0.5	669,973	666,362	-3,611	-0.5	26
	직영	프란치스코어린이집	1,412,904	1,397,836	15,068	-1.1	1,412,904	1,397,836	15,068	-1.1	27
	수탁	한빛어린이집	605,140	585,680	-19,460	-3.2	605,140	585,680	-19,460	-3.2	28

(단위: 천원)

분야	구분	시설명	세입				세출				면
			2020년2차 추경예산(A)	2020년3차 추경예산(B)	증감(B-A) 금액	증감(B-A) %	2020년2차 추경예산(A)	2020년3차추경예산(B)	증감(B-A) 금액	증감(B-A) %	
영유아	수탁	해그린어린이집	425,053	420,328	-4,725	-1.1	425,053	420,328	-4,725	-1.1	29
	수탁	해뜨락어린이집	416,035	412,235	-3,800	-0.9	416,035	412,235	-3,800	-0.9	30

[다자간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하여, 법인사무국 부회장Fr. 조용철 의안 보고를 마치다.]

[의장] 임원분들께서는 제2호 의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나 의견이 있다면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출석 이사와 감사에게 제2호 의안의 심의를 통하여 해당 의안에 문제점 및 특이 조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다. 이후, 의장은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청, 전원 원안 찬성으로 제2호 의안인 법인 산하 직영·수탁 영·유아복지시설 2020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제3호 의안 :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 2020년 사업총평가 및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요청의 건

◎ 의장 황경원 : 제3호 의안인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 2020년 사업총평가 및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김성훈 상임이사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임이사 김성훈 : 제3호 의안인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 2020년 사업총평가 및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을 요청해온 법인 외 산하 직영·수탁시설은 총70개 시설입니다. 해당 의안 내용은 사회복지팀의 각 복지담당(관)직원의 1차 검토와 법인 재무·회계담당관의 2차 검토, 최종적으로 심점섭 이사님과 김기선 감사님의 3차 검토를 거쳐 수정·보완하였으며 먼저, 법인의 2020년 사업총평가 및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후, 산하 직영·수탁 시설 중 세부 설명을 요(要)하는 시설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법인사무국 부회장Fr. 조용철께서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임원분들께서는 이하 내용 및 자료집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법 인 과 총70개 시설**	법인(사무국) ➡ **법인** 법인 산하 직영시설 2020년 사업총평가 및 세입·세출결산(안) 승인 요청 시설 ➡ **총54개 시설** 법인 산하 수탁시설 2020년 사업총평가 및 세입·세출결산(안) 승인 요청 시설 ➡ **총16개 시설**

※[참고] 영·유아복지, 아동시설(방과후교실어린이집) 제외 사유: 어린이집 회계기간 1월~12월 ➡ 3월~익년 2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조, 제19조 제1항의 근거하여 시설 이용자 확정이 3월을 기준으로 이뤄지는 어린이집의 경우, 회계 연도를 변경하여 회계 명확성을 도모하도록 함.

⊙ 부회장 Fr. 조용철 : 먼저, 이사회의 승인을 요청드리는 법인사무국의 2020년 사업총평가 및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린 후, 이어서 법인 산하 직영·수탁시설 70개 중 세부 설명을 要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하 내용 및 자료집을 참조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원분들께서는 해당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천원)

분야	구분	시설명	세입				세출				면
			2020년 예산(A)	2020년 결산(B)	잔액 (A-B)	집행율 (%)	2020년 예산(A)	2020년 결산(B)	잔액 (A-B)	집행율 (%)	
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8,924,829	9,074,713	-149,884	101.7	8,924,829	9,074,713	-149,884	101.7	37
종합 (7개)	수탁	동작종합사회복지관	1,904,218	1,890,167	14,051	99.3	1,904,218	1,890,167	14,051	99.3	93
	수탁	등촌7종합사회복지관 외 부설기관	2,950,460	2,879,603	70,857	97.6	2,950,460	2,879,603	70,857	97.6	110
	수탁	상계종합사회복지관 외 부설기관	3,751,033	3,505,739	245,294	93.5	3,751,033	3,505,739	245,294	93.5	120
	수탁	신당종합사회복지관	2,091,530	2,012,257	79,273	96.2	2,091,530	2,012,257	79,273	96.2	132
	수탁	유락종합사회복지관	4,050,000	3,973,514	76,486	98.1	4,050,000	3,973,514	76,486	98.1	142
	수탁	중곡종합사회복지관	1,969,643	1,891,415	78,228	96.0	1,969,643	1,891,415	78,228	96.0	166
	수탁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외 부설기관	3,723,612	3,619,992	103,620	97.2	3,723,612	3,619,992	103,620	97.2	178
영유아 (1개)	수탁	구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1,578,316	1,261,750	316,566	79.9	1,578,316	1,261,750	316,566	79.9	197
아동 (4개)	직영	샛별지역아동센터	171,935	170,980	955	99.4	171,935	170,980	955	99.4	211
	직영	성가정입양원	1,951,757	2,122,499	-170,742	-108.7	1,951,757	2,122,499	-170,742	-108.7	214
	직영	우리들의공부방 지역아동센터	275,143	274,742	401	99.9	275,143	274,742	401	99.9	223
	직영	해뜨는집	296,485	321,192	-24,707	108.3	296,485	321,192	-24,707	108.3	227
노인 (20개)	수탁	금천노인종합복지관 외 부설기관	5,772,008	5,748,376	23,632	99.6	5,772,008	5,748,376	23,632	99.6	231
	수탁	동작노인종합복지관 외 부설기관	3,866,941	3,866,287	654	100.0	3,866,941	3,866,287	654	100.0	242
	직영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 외 부설기관	3,251,540	3,251,345	195	100.0	3,251,540	3,251,345	195	100.0	249
	수탁	성동노인종합복지관 외 부설기관	3,962,391	3,973,290	-10,899	100.3	3,962,391	3,973,290	-10,899	100.3	267
	직영	강일성모노인요양원	2,851,480	2,934,013	-82,533	102.9	2,851,480	2,934,013	-82,533	102.9	277
	수탁	양천어르신요양센터 외 부설기관	3,460,796	3,418,338	42,428	98.8	3,460,796	3,418,338	42,428	98.8	294
	수탁	고덕양로원	2,117,750	2,040,066	77,684	96.3	2,117,750	2,040,066	77,684	96.3	315
	직영	갈현동성당데이케어센터	456,860	455,234	1,626	99.6	456,860	455,234	1,626	99.6	322
	직영	고척동성당데이케어센터	435,000	422,389	12,611	97.1	435,000	422,389	12,611	97.1	332
	직영	구파발성당데이케어센터	526,713	526,391	322	99.9	526,713	526,391	322	99.9	338
	직영	금호동성당데이케어센터	372,819	367,496	5,323	98.6	372,819	367,496	5,323	98.6	343
	직영	상계동성당데이케어센터	503,643	489,938	16,705	96.7	503,643	489,938	16,705	96.7	346

(단위: 천원)

분야	구분	시설명	세입 2020년 예산(A)	세입 2020년 결산(B)	세입 잔액 (A-B)	세입 집행율 (%)	세출 2020년 예산(A)	세출 2020년 결산(B)	세출 잔액 (A-B)	세출 집행율 (%)	면
노 인	직영	시흥4동성당데이케어센터	412,623	407,158	5,465	98.7	412,623	407,158	5,465	98.7	352
	직영	신당동성당데이케어센터	568,857	558,624	10,233	98.2	568,857	558,624	10,233	98.2	356
	직영	신림성모성당데이케어센터	617,209	568,342	48,867	92.1	617,209	568,342	48,867	92.1	364
	직영	왕십리성당데이케어센터	511,244	513,662	-2,418	100.5	511,244	513,662	-2,418	100.5	371
	직영	천호동성당데이케어센터	537,345	538,669	-1,324	100.2	537,345	538,669	-1,324	100.2	378
	직영	행운동성당데이케어센터	440,416	444,479	-4,063	100.9	440,416	444,479	-4,063	100.9	384
	직영	혜화동성당데이케어센터	576,259	571,209	5,050	99.1	576,259	571,209	5,050	99.1	390
	직영	화곡동성당데이케어센터	635,400	640,985	-5,585	100.9	635,400	640,985	-5,585	100.9	400
장애인 (33개)	수탁	구립강서구직업재활센터	4,616,184	4,749,027	-132,843	102.9	4,616,184	4,749,027	-132,843	102.9	409
	직영	꿈손장애인단기보호센터	454,397	454,216	181	100.0	454,397	454,216	181	100.0	424
	직영	나자로의집보호작업장	399,610	443,458	-43,848	111.0	399,610	443,458	-43,848	111.0	431
	직영	너울자리공동생활가정	213,413	213,409	4	100.0	213,413	213,409	4	100.0	437
	직영	다사랑공동생활가정	71,838	71,364	474	99.3	71,838	71,364	474	99.3	443
	직영	다향공동생활가정	54,043	54,033	10	100.0	54,043	54,033	10	100.0	447
	직영	두레네공동생활가정	75,064	75,013	51	99.9	75,064	75,013	51	99.9	452
	직영	디딤자리	2,136,285	2,174,693	-38,408	101.8	2,136,285	2,174,693	-38,408	101.8	455
	직영	루치아공동생활가정	68,159	68,645	-486	100.7	68,159	68,645	-486	100.7	473
	직영	마로니에공동생활가정	119,478	119,404	74	99.9	119,478	119,404	74	99.9	477
	직영	바오로교실보호작업장	390,833	398,055	-7,222	101.8	390,833	398,055	-7,222	101.8	480
	직영	바오로교실주간보호시설	298,143	292,505	5,638	98.1	298,143	292,505	5,638	98.1	487
	직영	보금자리공동생활가정	77,321	77,120	201	99.7	77,321	77,120	201	99.7	493
	직영	비둘기주간보호시설	202,099	201,803	296	99.9	202,099	201,803	296	99.9	496
	직영	비둘기직업적응훈련시설	460,833	441,256	19,577	95.8	460,833	441,256	19,577	95.8	505
	직영	사랑손주간보호센터	245,520	249,509	-3,989	101.6	245,520	249,509	-3,989	101.6	509
	직영	사랑손직업적응훈련시설	626,311	623,063	3,248	99.5	626,311	623,063	3,248	99.5	519
	직영	서로함께공동생활가정	85,835	86,157	-322	100.4	85,835	86,157	-322	100.4	524
	직영	성빈센트환경마을	1,392,596	1,538,959	-146,363	110.5	1,392,596	1,538,959	-146,363	110.5	529

(단위 : 천원)

분야	구분	시설명	세입				세출				면
			2020년 예산(A)	2020년 결산(B)	잔액 (A-B)	집행율 (%)	2020년 예산(A)	2020년 결산(B)	잔액 (A-B)	집행율 (%)	
장애인	직영	성지보호작업장	493,141	498,489	-5,348	101.1	493,141	498,489	-5,348	101.1	532
	직영	소라네공동생활가정	79,674	79,674	0	100.0	79,674	79,674	0	100.0	538
	직영	신망애공동생활가정	100,628	100,522	106	99.9	100,628	100,522	106	99.9	541
	직영	신망애의집	493,652	494,799	-1,147	100.2	493,652	494,799	-1,147	100.2	544
	직영	연희네공동생활가정	62,188	61,995	193	99.7	62,188	61,995	193	99.7	548
	수탁	중구장애인복지관	1,728,867	1,718,893	9,974	99.4	1,728,867	1,718,893	9,974	99.4	551
	직영	하늘자리공동생활가정	89,303	89,307	-4	100.0	89,303	89,307	-4	100.0	557
	직영	한우리보호작업장	1,350,000	1,322,964	27,036	98.0	1,350,000	1,322,964	27,036	98.0	561
	수탁	한우리정보문화센터 외부설기관	4,291,117	4,362,515	-71,398	101.7	4,291,117	4,362,515	-71,398	101.7	567
	직영	햇빛자리	259,305	263,708	-4,403	101.7	259,305	263,708	-4,403	101.7	576
	직영	헬렌켈러의집 공동생활가정	61,734	62,162	-428	100.7	61,734	62,162	-428	100.7	583
	직영	헬렌켈러의집 공동생활가정2	98,617	99,165	-548	100.6	98,617	99,165	-548	100.6	587
	직영	헬렌켈러의집 단기거주시설	427,457	425,460	1,997	99.5	427,457	425,460	1,997	99.5	591
	직영	헬렌켈러의집 주간보호시설	233,283	235,333	-2,050	100.9	233,283	235,333	-2,050	100.9	597
여성 (2개)	직영	마음자리	879,386	921,443	-42,057	104.8	879,386	921,443	-42,057	104.8	604
	직영	화해의집쉼자리	475,810	480,731	-4,921	101.0	475,810	480,731	-4,921	101.0	610
노숙인 (1개)	직영	우리집공동체	150,581	147,444	3,137	97.9	150,581	147,444	3,137	97.9	614
의료 (2개)	직영	요셉의원	2,582,659	3,145,855	-563,196	121.8	2,582,659	3,145,855	-563,196	121.8	616
	직영	희망의집	156,301	153,011	3,290	97.9	156,301	153,011	3,290	97.9	619

[다자간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하여, 법인사무국 부회장Fr. 조용철 의안 보고를 마치다.]

[의장] 임원분들께서는 제3호 의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나 의견이 있다면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출석 이사와 감사에게 제3호 의안의 심의를 통하여 해당 의안에 문제점 및 특이 조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다. 전례없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국민이 힘들었던 시기였던 만큼 법인 산하 직영·수탁시설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많았을 것이라 짐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하 직영·수탁시설 임직원

등 모든 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지역사회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헌신해주신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2021년에도 지난 해 사업평가에서 나타난 쇄신·지속할 내용을 반영한 목적 사업수행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하다. 이후, 의장은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청, 전원 원안 찬성으로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 2020년 사업총평가 및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제4호 의안 : 법인 산하 직영·수탁시설 영 · 유아복지, 아동시설(방과후교실어린이집)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요청의 건

◎ **의장 황경원** : 제4호 의안인 법인 산하 직영·수탁시설 영·유아복지, 아동시설(방과후교실어린이집)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김성훈 상임이사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임이사 김성훈** : 제4호 의안인 법인 산하 직영·수탁시설 영·유아복지, 아동시설(방과후어린이집) 2021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 요청을 요청해온 시설은 총19개 시설로서 본 내용은 사회복지팀 영·유아복지 담당의 1차 검토와 법인 재무·회계담당관의 2차 검토, 최종적으로 심점섭 이사님과 김기선 감사님의 3차 검토를 거쳐 수정·보완하였으며 이하 승인을 요청해온 시설 중, 세부 설명을 요(要)하는 시설에 대하여 법인사무국 부회장Fr. 조용철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원분들께서는 이하 내용 및 자료집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총19개 시설	직영·수탁시설 **영·유아복지, 아동시설(방과후교실어린이집)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요청 시설 ➡ **총 19개 시설**

※ **[사유] 어린이집의 회계기간 : 1월~12월 ➡ 3월~익년 2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조, 제19조 제1항의 근거하여, 시설 이용자 확정이 3월을 기준으로 이뤄지는 어린이집의 경우, 회계 연도를 변경하여 회계 명확성을 도모하도록 함.

◎ **부회장 Fr. 조용철** : 이사회의 승인을 요청드리는 법인 산하 직영·수탁시설 19개 중 세부 설명을 요(要)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하 내용 및 자료집을 참조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원분들께서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천원)

분야	구분	시 설 명	세 입				세 출				면
			2020년 추경예산(A)	2021년 예산액(B)	증감 (B-A)	비율 (%)	2020년 추경예산(A)	2021년 예산액(B)	증감 (B-A)	비율 (%)	
영유아 (18개)	수탁	도 곡 어 린 이 집	1,190,651	1,350,467	159,816	13.4	1,190,651	1,350,467	159,816	13.4	626
	수탁	동화나라어린이집	1,282,000	1,397,652	115,652	9.0	1,282,000	1,397,652	115,652	9.0	629
	수탁	목 동 어 린 이 집	1,042,142	1,181,376	139,234	13.4	1,042,142	1,181,376	139,234	13.4	632
	수탁	방 배 어 린 이 집	454,812	471,993	17,181	3.8	454,812	471,993	17,181	3.8	638
	수탁	베들레헴어린이집	301,064	300,457	-607	-0.2	301,064	300,457	-607	-0.2	643
	수탁	보 미 나 어 린 이 집	576,307	667,876	91,569	15.9	576,307	667,876	91,569	15.9	646
	직영	서초3단지어린이집	477,633	473,614	-4,019	-0.8	477,633	473,614	-4,019	-0.8	649
	수탁	성 모 어 린 이 집	410,856	393,408	-17,448	-4.2	410,856	393,408	-17,448	-4.2	653

(단위:천원)

분야	구분	시설명	세입				세출				면
			2020년 추경예산(A)	2021년 예산액(B)	증감 (B-A)	비율 (%)	2020년 추경예산(A)	2021년 예산액(B)	증감 (B-A)	비율 (%)	
영유아	수탁	송화어린이집	556,428	583,416	26,988	4.9	556,428	583,416	26,988	4.9	656
	수탁	쌍문2동어린이집	788,434	870,857	82,423	10.5	788,434	870,857	82,423	10.5	659
	수탁	연화어린이집	788,994	895,391	106,397	13.5	788,994	895,391	106,397	13.5	663
	수탁	예다움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523,240	564,592	41,352	7.9	523,240	564,592	41,352	7.9	667
	수탁	원당어린이집	666,362	667,422	1,060	0.2	666,362	667,422	1,060	0.2	672
	수탁	은도어린이집	586,939	668,755	81,816	13.9	586,939	668,755	81,816	13.9	675
	수탁	프란치스코어린이집	1,397,836	1,481,713	83,877	6.0	1,397,836	1,481,713	83,877	6.0	679
	수탁	한빛어린이집	585,680	678,452	92,772	15.8	585,680	678,452	92,772	15.8	682
	수탁	해그린어린이집	420,328	447,755	27,427	6.5	420,328	447,755	27,427	6.5	686
	수탁	해뜨락어린이집	412,235	428,706	16,471	4.0	412,235	428,706	16,471	4.0	689
아동 (1개)	수탁	상계방과후어린이집	52,746	58,582	5,836	11.1	52,746	58,582	5,836	11.1	694

[다자간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하여, 법인사무국 부회장Fr. 조용철 의안 보고를 마치다.]

[의장] 임원분들께서는 제4호 의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나 의견이 있다면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출석 이사와 감사에게 제4호 의안의 심의를 통하여 해당 의안에 문제점 및 특이 조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다. 이후, 의장은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청, 전원 원안 찬성으로 제4호 의안인 법인 산하 직영·수탁시설 영·유아복지, 아동시설(방과후교실어린이집)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제5호 의안 :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 2021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요청 의 건

◎ 의장 황경원 : 제5호 의안인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 2021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김성훈 상임이사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임이사 김성훈 : 제5호 의안인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 2021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을 요청해온 법인과 직영·수탁시설은 총40개로서 본 의안 내용은 사회복지팀 각 복지분야 담당(관)의 1차 검토와 법인 재무·회계담당관의 2차 검토, 최종적으로 심점섭 이사님과 김기선 감사님의 3차 검토를 거쳐 수정·보완된 자료임을 보고 드리며 승인을 요청해온 법인 및 산하 시설 중, 세부 설명을 요(要)하는 시설에 대하여 법인사무국 부회장Fr. 조용철께서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임원분들께서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회장 Fr. 조용철** : 먼저, 법인사무국의 2021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린 후, 이어서 법인 산하 직영·수탁시설 40개 중 세부 설명을 요(要)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하 내용 및 자료집을 참조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원분들께서는 각각의 해당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천원)

분야	구분	시설명	세입				세출				면
			2021년 예산(A)	2021년1차 추경예산(B)	증감 (B-A)	비율 (%)	2021년 예산(A)	2021년1차 추경예산(B)	증감 (B-A)	비율 (%)	
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8,356,013	8,115,360	-240,653	-2.9	8,356,013	8,115,360	-240,653	-2.9	701
종합 (3개)	수탁	동작종합사회복지관	1,787,208	1,834,147	46,939	2.6	1,787,208	1,834,147	46,939	2.6	702
	수탁	등촌7종합사회복지관 외부설기관	2,912,630	2,967,700	55,070	1.9	2,912,630	2,967,700	55,070	1.9	703
	수탁	중곡종합사회복지관	2,195,498	2,187,124	-8,374	-0.4	2,195,498	2,187,124	-8,374	-0.4	708
영유아 (1개)	수탁	구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1,502,842	1,650,658	147,816	9.8	1,502,842	1,650,658	147,816	9.8	709
아동 (2개)	직영	성가정입양원	1,680,793	1,948,216	267,423	15.9	1,680,793	1,948,216	267,423	15.9	710
	직영	우리들의공부방 지역아동센터	263,888	257,575	-6,313	-2.4	263,888	257,575	-6,313	-2.4	711
노인 (11개)	수탁	금천노인종합복지관 외부설기관	5,158,503	5,100,841	-57,662	-1.1	5,158,503	5,100,841	-57,662	-1.1	712
	수탁	동작노인종합복지관 외부설기관	3,895,735	4,210,635	314,897	8.1	3,895,735	4,210,635	314,897	8.1	714
	직영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 외부설기관	3,069,570	3,294,668	225,098	7.3	3,069,570	3,294,668	225,098	7.3	716
	수탁	성동노인종합복지관 외부설기관	3,906,545	4,231,747	325,202	8.3	3,906,545	4,231,747	325,202	8.3	718
	수탁	양천어르신요양센터 외부설기관	3,420,305	3,518,928	98,623	2.9	3,420,305	3,518,928	98,623	2.9	721
	직영	구파발성당데이케어센터	514,270	521,294	7,024	1.4	514,270	521,294	7,024	1.4	724
	직영	금호동성당데이케어센터	434,727	434,727	0	0.0	434,727	434,727	0	0.0	725
	직영	상계동성당데이케어센터	499,494	522,301	22,807	4.6	499,494	522,301	22,807	4.6	726
	직영	시흥4동성당데이케어센터	431,204	424,745	-6,459	-1.5	431,204	424,745	-6,459	-1.5	727
	직영	신당동성당데이케어센터	516,315	492,271	-24,044	-4.7	516,315	492,271	-24,044	-4.7	729
	직영	천호동성당데이케어센터	515,132	547,871	32,739	6.4	515,132	547,871	32,739	6.4	730
장애인 (20개)	직영	꿈손장애인단기보호센터	434,270	440,747	6,477	1.5	434,270	440,747	6,477	1.5	732
	직영	나자로의집보호작업장	370,125	421,836	51,711	14.0	370,125	421,836	51,711	14.0	733
	직영	너울자리공동생활가정	180,336	179,902	-434	-0.2	180,336	179,902	-434	-0.2	734
	직영	다사랑공동생활가정	77,471	78,242	771	1.0	77,471	78,242	771	1.0	735

(단위:천원)

분야	구분	시설명	세입 2021년 예산(A)	세입 2021년1차 추경예산(B)	세입 증감 (B-A)	세입 비율 (%)	세출 2021년 예산(A)	세출 2021년1차 추경예산(B)	세출 증감 (B-A)	세출 비율 (%)	면
장애인	직영	다향공동생활가정	59,980	62,824	2,844	4.7	59,980	62,824	2,844	4.7	736
	직영	두레네공동생활가정	74,657	74,754	97	0.1	74,657	74,754	97	0.1	737
	수탁	디딤자리	2,233,813	2,257,852	24,039	1.1	2,233,813	2,257,852	24,039	1.1	738
	직영	루치아공동생활가정	68,316	70,382	2,066	3.0	68,316	70,382	2,066	3.0	739
	직영	바오로교실보호작업장	373,487	400,783	27,296	7.3	373,487	400,783	27,296	7.3	740
	직영	바오로교실주간보호시설	264,373	284,307	19,934	7.5	264,373	284,307	19,934	7.5	741
	직영	보금자리공동생활가정	79,269	78,567	-702	-0.9	79,269	78,567	-702	-0.9	742
	직영	사랑손주간보호센터	253,850	246,425	-7,425	-2.9	253,850	246,425	-7,425	-2.9	743
	직영	사랑손직업적응훈련시설	471,739	502,473	30,734	6.5	471,739	502,473	30,734	6.5	744
	직영	하늘자리공동생활가정	76,357	80,502	4,145	5.4	76,357	80,502	4,145	5.4	745
	수탁	한우리보호작업장	1,447,400	1,521,740	74,340	5.1	1,447,400	1,521,740	74,340	5.1	746
	수탁	한우리정보문화센터 외부설기관	4,623,857	4,726,713	102,856	2.2	4,623,857	4,726,713	102,856	2.2	747
	직영	햇빛자리	302,520	310,434	7,914	2.6	302,520	310,434	7,914	2.6	750
	직영	헬렌켈러의집 공동생활가정	63,936	65,286	1,350	2.1	63,936	65,286	1,350	2.1	751
	직영	헬렌켈러의집 단기거주시설	453,561	465,451	11,890	2.6	453,561	465,451	11,890	2.6	752
	직영	헬렌켈러의집 주간보호시설	263,201	269,550	6,349	2.4	263,201	269,550	6,349	2.4	753
여성 (1개)	직영	마음자리	841,165	904,520	63,355	7.5	841,165	904,520	63,355	7.5	754
노숙인 (1개)	직영	우리집공동체	84,838	102,341	17,503	20.6	84,838	102,341	17,503	20.6	755
의료 (1개)	직영	희망의집	149,400	157,681	8,281	5.5	149,400	157,681	8,281	5.5	756

※ 금호동성당데이케어센터: 총액변동 없음(관·항·목 변경).

[다자간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하여, 법인사무국 부회장Fr. 조용철 의안 보고를 마치다.]

[의장] 임원분들께서는 제5호 의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나 의견이 있다면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출석 이사와 감사에게 제5호 의안의 심의를 통하여 해당 의안에 문제점 및 특이 조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다. 이후, 의장은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청, 전원 원안 찬성으로 제5호 의안인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 2021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제6호 의안 : 법인 산하 「직영·수탁시설 운영규정」 제2차 개정(안) 승인 요청의 건

◎ **의장 황경원** : 제6호 의안인 법인 산하 「직영·수탁시설 운영규정」 제2차 개정(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김성훈 상임이사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임이사 김성훈** : 제6호 의안인 법인 산하 「직영·수탁시설 운영규정」 제2차 개정(안) 승인 요청 건으로 본 자료는 정태호 이사님과 손창배 법인 자문노무사(現 법인 운영위원 활동 중)의 검토를 통한 자문내용을 반영해 수정·보완된 의안이며 임원분들께서는 이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영 · 수탁시설 운영규정」 제2차 개정(안)

◘ 개정 사유

1. 지난 2010년 2월 24일 제정된 이후 약 10년이 경과되었으며(2017년 일부개정 포상관련),
2. 시설장 계약의 법적 성격((위임계약)을 명확히 하고 실무책임자 임면의 경우 규정과 현실의 불일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인의 임면권을 삭제하는 등 이와 관련한 내용(징계대상 제외, 인사위원회 구성, 위임계약서 변경 등)을 개정 보완하였고,
3. 시설장의 경우 위임 계약 해지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사법기관의 수사 등 기타 시설장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업무정지'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4. 또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민원 이외 안전사고 등에 대한 보고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산하 시설의 운영에 대한 책임 의식을 고취할 필요 있음.

◘ 개정(안)의 주요내용

구 분	개정(안) 주 요 내 용
제2장 시설의 운영	**1. 제5조(시설의 운영) 제1항, 제2항 변경** ▪ 자체 운영규정➡ 해당 분야별 공통운영규정 (해당 분야별 공통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적용중인 현실 반영하되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단서 부분을 규정) **2. 제5조(시설의 운영) 제5항 변경** ▪ 협의회 활동 ➡ 법인이 제안하는 행사나 회의, 활동 등으로 수정 (분야별협의회는 법인의 산하 기구가 아님) **3. 제6조(시설의 관리) 제3항 변경** ▪ 수탁시설의 증·개축시 해당 자치단체의 승인을 추가 (수탁시설의 경우 그 소유자는 해당 자치단체인 관계로 승인을 득할 것을 요구)
제3장 인사관리	**1. 제9조(시설인사위원회 설치)** ▪ 시설장을 징계대상에서 삭제 ➡ 시설장은 위임계약의 당사자로 일반 직원과 달라 징계대상 부적합

	▪ 실무책임자의 임면 등 삭제 ➡ 실무책임자의 임면 등은 법인이 아닌 해당시설의 시설장이 함이 상당하며, 구체적인 사유는 제13조 참조 **2. 제10조(시설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항** ▪ 제1호 변경 ➡ 위원회 구성관련 사무국장, 주무부서장은 현재 없는 직제 ▪ 제3호 삭제 ➡ 실무책임자의 임면 등은 법인이 아닌 해당시설의 시설장이 함 **3. 제12조(시설장의 정년 및 계약기간 등)** ▪ 제4항의 변경 ➡ 계약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추가 ▪ 제5항의 신설 ➡ 시설장의 업무정지 근거 마련 **4. 제13조(실무책임자(부장/사무국장)의 임면) - 삭제** ➡ 실무책임자의 임면은 해당시설의 시설장이 맡는 것이 상당함. ① 법인이 임명해도 법인이 아닌 해당 시설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함. (보조금지급관계) ② 수탁시설의 경우 위탁반납 등 위탁 관계 종료 시 시설장을 제외하고 고용승계되는 현실 반영 필요 **5. 제16조(순환보직) - 삭제**
제4장 사업계획(실적) 및 예·결산	**1. 제17조(사업계획 및 예산) 제1항과 제18조 제1항 - 변경** ▪ 산하 시설에서 법인에 제출할 서류 간소화 ➡ 현실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이사회의 요구자료로 대체 **2. 제17조 제2항과 제18조 제2항 - 삭제** ▪ 직원교육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의무 삭제 ➡ 직원교육 시행을 시설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제23조 시설장 및 직원교육), 현실적으로 보고하는 시설이 없음을 고려
제6장 교육	**1. 제23조(시설장 및 직원교육)** ▪ 기존 내용이 유사한 제2항과 제3항을 ➡ 제2항으로 통합 **2. 제24조(교육 및 연수의 보고) - 삭제** ▪ 인력풀 미 구성, 지자체의 근무시간 제약 등으로 인력풀 활용의 어려움 ▪ 직원교육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 삭제
제7장 지도감독	**1. 제25조(지도점검) 제1항 단서 - 삭제** ▪ 법인의 지도점검(연 1회)은 지자체의 평가항목으로 평가결과 우수시설이라 해도 점검대상 예외 없음. **2. 제27조(민원 및 안전사고 등 처리) - 변경** ▪ 시설에서 발생하는 민원이나 안전사고 등에 대해 보고의무를 강조

※ 이하, 「직영·수탁시설 운영규정」 제2차 개정(안) 본문 -15면 참조

「직영 · 수탁시설 운영규정」 제2차 개정(안)

현 행	개정 (안)	개정 사유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이하 '본 회')의 직영· 수탁시설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가톨릭정신이 반영되고, 합리적이며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이하 '법인') 의 산하 시설(직영·수탁시설)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가톨릭정신이 반영되고, 합리적이며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정]** ■ 본 회➡ 법인 (시설과의 관계 고려 변경) ■ 직영·수탁시설➡ 산하 시설(직영·수탁시설) ※ 이하 같다.
제2조 (용어정의) ① '직영시설'이라 함은 본 회의 명의로 관할 관청에 신고 된 시설이나 필요에 의하여 설립,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수탁시설'이라 함은 본 회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 받아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③ 위 각 호에 규정된 시설 외의 시설은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감독한다. ④ '부설(병설)시설'이라 함은 시설이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직접 설립하거나 정부로부터 신규로 위탁받은 시설을 말하며, 시설의 형태에 따라 예산과 시설장을 따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 (용어정의)** ① '직영시설'이라 함은 법인의 명의로 관할 관청에 신고된 시설이나 법인의 필요에 의하여 설립,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수탁시설'이라 함은 법인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 받아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③ 위 각 항에 규정된 시설 외의 시설은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감독한다. ④ '부설(병설)시설'이라 함은 시설(주된 시설)이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직접 설립하거나 정부로부터 ~~신규로~~ 위탁받은 시설로 그 형태에 따라 예산을 따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부설(병설)시설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합의하에 겸직하도록 할 수 있다.	**[변경]** ■ 제4항 변경: '신규' 용어 삭제(신규 수탁 이외 재수탁도 있기 때문임.) ■ 어린이집을 제외 한 노인복지관 병설 데이케어센터 또는 장애인시설 등의 경우 시설장 겸직을 고려
제3조 (적용) 직영·수탁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 운영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사항이외에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적용)** 법인의 산하 시설 운영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사항 이외에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책임) 본 회는 시설이 지역사회와 서비스대상자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시설의 직원과 서비스대상자들의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 (책임)** 법인은 산하 시설이 지역사회와 서비스대상자들에게 최선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시설의 직원과 서비스대상자들의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2장 시설의 운영	**제2장 시설의 운영**	
제5조 (시설의 운영)	**제5조 (시설의 운영)**	**[변경]**

「직영 · 수탁시설 운영규정 제2차 개정(안)

현 행	개정 (안)	개정 사유
① 각 시설은 시설 설립 및 수탁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하며 그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단 필요시 분야별 표준운영규정을 제정,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운영규정은 관련법과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본 회의 관련 운영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제정한다. ③ 시설의 운영규정 제정·개정 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본 회는 보고된 운영규정의 내용이 적절치 않을 경우 시정을 명 할 수 있다. ⑤ 시설은 본 회의 협의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① 산하 시설은 설립 및 수탁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별 공통운영규정을 제정하며 그에 따라 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산하 시설의 운영규정(해당분야별 공통운영규정, 자체 운영규정 등)은 관련법과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법인의 관련 운영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제정한다. ③ 변동없음. ④ 법인은 보고된 운영규정의 내용이 적절치 않을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설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산하 시설은 법인이 제안하는 행사나 회의,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 제1항 변경: 해당 분야별 공통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적용 중인 현실 반영하되 시설의 특수성 고려하여 단서 부분을 규정 ■ 제5항 변경: 협의회 활동➡법인이 제안하는 행사나 회의, 활동 등으로 수정 (분야별협의회는 법인의 산하기구가 아니기 때문임)
제6조 (시설의 관리) ① 각 시설의 장은 관리시설과 그 부속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관리하여야 하며, 본 회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물 등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을 할 수 없다. ② 직영시설의 장은 증·개축, 신축이 필요할 때 본 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시설의 장은 증·개축, 신축이 필요할 때 본 회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동일건물 내에 두 개 이상의 시설이 위치할 경우에는 각 시설은 주된 건물관리 의무가 있는 시설장과 협의·조정하여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각 시설은 본 회가 정한 상징물, 문서, 각 종 디자인 등을 정해진 규격에 따라 사용 및 설치할 의무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세칙에 규정한다.	**제6조 (시설의 관리)** ① 산하 시설의 장은 관리시설과 그 부속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관리하여야 하며, 법인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물 등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을 할 수 없다. ② 직영시설의 장은 증·개축, 신축이 필요할 때 법인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시설의 장은 증·개축, 신축이 필요할 때 해당 자치단체의 승인을 득한 후 법인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변동없음. ⑤ 산하 시설은 법인이 정한 상징물, 문서, 각 종 디자인 등을 정해진 규격에 따라 사용 및 설치할 의무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세칙에 규정한다. ⑥ 산하시설은 긴급하거나 예외적인 상황 외에는 법인의 보고체계에 준하	**[변경·신설]** ■ 제3항 변경: 수탁시설의 경우 그 소유자는 해당 자치단체인 관계로 승인을 득할 것을 요구 ■ 제6항 신설: 법인 보고체계 준수 필요

현 행	개정 (안)	개정 사유
	여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제7조 (부설(병설)시설의 설치) ① 시설은 목적사업 수행과 발전을 목적으로 다음 각호 1의 경우에 동일 건물 내·외부, 다른 거소지에 '부설(병설)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사전에 본 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 시설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자체적으로 설치할 경우 2. 시설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중앙,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할 경우	**제7조 (부설(병설)시설의 설치)** ① 산하 시설은 목적사업 수행과 발전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 1의 경우에 동일 건물 내·외부, 다른 거소지에 '부설(병설)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사전에 법인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호와 2호 변동없음.	**[변경]** ■ 용어변경
제8조 (부설(병설)시설의 관리) 당해 시설장과의 계약을 통하여 부설(병설)시설의 관리와 책임을 명확히 하며, 시설장은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8조 (부설(병설)시설의 관리)** 변동없음.	
제3장 인사관리	**제3장 인사관리**	
제9조 (시설인사위원회 설치) 본 회는 시설의 장과 실무책임자의 임면, 징계 등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시설인사위원회를 둔다.	**제9조 (시설인사위원회 설치)** 법인은 시설장의 임면 등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시설인사위원회를 둔다.	**[변경 · 삭제]** ■ 시설장은 위임계약의 당사자로 일반직원과 다르기 때문에 징계의 대상으로는 부적합. ■ 실무책임자의 임면 등 삭제(실무책임자의 임면 등은 법인이 아닌 해당시설의 시설장이 함이 상당함. 구체적인 사유는 제13조(실무책임자(부장/사무국장)의 임면) 사유 참조)
제10조 (시설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설인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의 임기는 보직 시기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본 회의 회장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제10조 (시설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변동없음. ②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인의 회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은 회장, 부회장으로 한다	**[변경 · 삭제]** ■ 제2항 1호 변경:사무국장, 주무부서장은 현재 없는 직제임. ■ 제2항 3호 삭제:실무책임자의 임면 등은 법인이 아닌 해당시

「직영 · 수탁시설 운영규정 제2차 개정(안)

현 행	개정 (안)	개정 사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은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주무부서장으로 한다. 2. 위촉위원-위촉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3. 특별위원-실무책임자의 임면에 관련된 사항일 경우 해당 시설장 ③ 위원장은 시설인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서기는 주무부서장이 맡는다. ④ 시설인사위원회의 소집절차, 의결정족수 등 시설인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별도의 사항이 없으면 본 회의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에 준한다.	2. 위촉위원-위촉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3. 삭제 ③ 위원장은 시설인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서기는 인사관련 담당이 맡는다. ④ 시설인사위원회의 소집절차, 의결정족수 등 시설인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별도의 사항이 없으면 법인의 인사위원회 관련규정에 준한다.	설의 시설장이 함. ■ 제3항의 변경:주무부서장이라는 직제는 없는 직제이며, 인사관련 담당이 맡는 것으로 함. ■ 제4항의 변경:인사위원회 운영규정이 없어 관련규정으로 변경함.
제11조 (시설장의 임면) ① 시설장은 각 법령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로 하며, 시설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회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시설장으로 임명된 자는 본 회와 별표2와 같이 근로에 대한 계약을 맺는다.	**제11조 (시설장의 임면)** ① 시설장은 각 법령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로 하며, 시설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회 승인을 받아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단, 재계약의 경우 기간만료에 따라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회장의 면담으로 갈음한다. ② 시설장으로 임명된 자는 법인과 서면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한다.	**[변경 · 삭제]** ■ 제1항의 변경:이사장⇒대표이사(정관변경에 따른 명칭변경) ■ 재계약의 경우 단서 추가 ■ 제2항의 변경:근로계약⇒위임계약(시설장은 근로자가 아님)
제12조 (시설장의 정년 및 임기) ① 시설장의 정년은 각 시설의 운영규정과 관련법,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지침에 따른다. ② 직영시설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1조 ①항에 의하여 재임명 할 수 있다. ③ 수탁시설장의 임기는 수탁기간으로 하며, 재수탁시에 11조 ①항에 의하여 재임명 할 수 있다. ④ 각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임기를 보장하고 연임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제12조 (시설장의 정년 및 계약기간 등)** ① 변동없음. ② 직영시설장의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제11조 ①항에 의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수탁시설장의 계약기간은 수탁기간으로 하며, 재수탁시에 제11조 ①항에 의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④ 산하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 1의 경우에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변경없음. 2. 고의나 과실로 인한 회계 부정이나 공금, 후원금품 횡령 등 금품사고의	**[변경 · 신설]** ■ 조 제목 변경:시설장위임계약에 맞게 임기를 계약기간으로 수정 ■ 제2항과 제3항의 변경 : 임기⇒계약기간(계약의 성격상 변경) ■ 제4항의 변경 및 신설: 2호(후원물품의 경우도 추가) 3호(평가제도가 전체 순위제가 아닌 등급제로 변경된 것을 반영)

현 행	개정 (안)	개정 사유
2. 고의나 과실로 인한 회계부정이나 공금, 후원금 횡령 등 금전 사고의 경우 3. 감독관청의 정기적인 평가에서 연속 2회 이상 전체 평가 시설의 하위 25%에 속한 경우 4. 기타 시설의 관리감독의 책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될 경우	경우 3. 보건복지부의 정기적인 평가에서 2회 이상 평가결과 최저등급에 해당한 경우 4.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법인이나 시설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신설) 5. 직장내 성희롱이나 괴롭힘 행위, 하대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신설) 6. 감독관청으로부터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업의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신설) 7. 제3장 제14조(직원의 임면), 제7장의 보고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신설) 8.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설하여 법인에 피해를 입힌 경우(신설) 9. 기타 시설의 관리감독의 책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될 경우 ⑥ 법인은 제4항의 제약해지사유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수사 등으로 시설장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서 배제하고 임시 시설장을 선임할 수 있다.(신설)	4호(법인이나 시설의 명예훼손사실을 해지사유로 추가) 5호(직장내 성희롱 등 인권침해 추가) 6호(행정처분 중 사업의 정지 이상의 경우를 추가) 7호(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8호(업무상 비밀 및 기밀누설에 대한 제재) ■ 제5항의 신설:시설장의 업무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13조 (실무책임자(부장/사무국장)의 임면) ① 실무책임자는 각 법령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② 시설 중 지역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성회관, 중앙기관과 생활자 100인 이상 생활시설(전문요양센터 등)의 실무책임자는 시설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③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칙에 규정한다.	**제13조 (실무책임자(부장/사무국장)의 임면)** 삭제	**[삭제]** ■ 실무책임자의 임면은 해당시설의 시설장이 맡는 것이 상당함. ① 법인이 임명해도 법인이 아닌 해당 시설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함.(보조금지급 관계) ② 수탁시설의 경우 위탁반납 등 위탁관계

현 행	개정 (안)	개정 사유
		종료 시 시설장을 제외하고 고용승계 되는 현실 반영 필요
제14조 (직원의 신규채용) ① 시설에서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자체 운영규정에 의하여 진행한다. ② 채용공고를 본 회의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임명 후 30일 이내에 본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직원의 임면)** ① 산하 시설에서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자체 운영규정에 의하여 진행한다. ② 채용공고를 법인과 해당 시설의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며, 임명 후 30일 이내에 직원 임명사항을 법인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산하 시설에서 직원이 사직 등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 후 30일 이내에 법인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변경 · 신설]** ■ 조 제목변경:직원의 채용 외 사직 등 근로 관계 종료시도 규정 필요 ■ 제2항의 변경:채용공고 시 해당 시설의 홈페이지 이용과 임명사항을 추가 ■ 제3항의 신설:근로관계 종료 사항 추가
제15조 (인사기록관리) 본 회는 각 시설의 시설장, 실무책임자의 인사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경력, 상벌, 근무평정 등 변동사항에 대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제15조 (인사기록관리)** 법인은 산하 시설의 시설장의 인사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경력, 시설장 평가 등 변동사항에 대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삭제]** ■ 실무책임자 삭제
제16조 (순환보직) 본 회는 각 시설의 시설장·실무책임자에 대하여 보직의 이동을 명 할 수 있다.	**제16조 (순환보직)** 삭제	**[삭제]** ■ 시설장의 경우 공개채용형식으로 임명
제4장 사업계획 및 예결산	**제4장 사업계획(실적) 및 예·결산**	**[변경]** ■ 장 제목 변경
제17조 (사업계획 및 예산) ① 시설은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11조"에 의거 다음 각호의 1에 명시된 서류를 본 회에 제출하며,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서식 1 2. 주요사업-서식2 3. 세입·세출예산총괄표-서식 3 4. 임·직원 보수 일람표-서식 4 ② 직원교육계획은 제7장 제23조의 별지 서식 11호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사업계획 및 예산)** ㊀ 산하 시설은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1에 명시된 서류를 법인에 제출하며, 그 서식은 별도로 정한다. 1. 삭제 2. 주요사업-~~서식 2~~ 3. 세입·세출예산총괄표 세입·세출명세서 포함)-~~서식 3~~ 4. 삭제 ② 삭제	**[변경 · 삭제]** ■ 제1항의 변경: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1조와 제1호, 제4호 삭제(현실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이사회의 요구자료로 대체) ■ 제2항 삭제:직원교육 시행을 시설의 의무로 규정하고(제23조 시설장 및 직원교육), 현실적으로 보고하는 시설이 없음을 고려

직영 · 수탁시설 운영규정 제2차 개정(안)

현 행	개정 (안)	개정 사유
제18조 (사업실적 및 결산) ① 시설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해 2월 10일전에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20조"에 의거 다음 각호의 1에 명시된 서류를 본 회에 제출하며,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총평가-서식 5 2. 사업실적-서식 6 3. 세입·세출결산 총괄표-서식 7 4. 세입세출결산서-서식 8 5. 현금 및 예금명세서-서식 9 ② 직원교육 결과보고는 제7장 제23조의 별지 서식12호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사업실적 및 결산)** ① 산하 시설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다음 각 호의 1에 명시된 서류를 법인에 제출하며, 서식은 별도로 정한다. 1. 사업총평가-~~서식 5~~ 2. 삭제 3. 세입·세출결산 총괄표-~~서식 7~~ 4. 세입세출결산서-~~서식 8~~ 5. 삭제 ② 삭제	**[변경·삭제]** ■ 제1항의 변경:회계연도를 달리하는 어린이집의 경우도 포함하기 위해 변경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20조와 제2호, 제4호, 제5호 삭제 (현실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이사회의 요구자료로 대체) ■ 제2항 삭제:직원교육 시행을 시설의 의무로 규정하고 (제23조 시설장 및 직원교육), 현실적으로 보고하는 시설이 없음을 고려
제5장 회 계	**제5장 회 계**	
제19조 (회계처리) 각 시설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제19조 (회계처리)** 산하 시설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변경]** ■ 용어변경
제20조 (법인전출금) ① 본 회는 시설 전출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시설전출금)** ① 법인은 시설 전출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변경·삭제]** ■ 조 제목 변경:지원하는 법인의 입장에서 제목을 변경
제21조 (퇴직금제도) ① 각 시설은 퇴직금제도에 따른 비용을 준비해야 하며, 퇴직연금제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제21조 (퇴직금제도)** ① 산하 시설은 퇴직금제도에 따른 비용을 준비해야 하며, 퇴직연금제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변경·삭제]** ■ 삭제 및 용어변경
제22조 (계약) ① 시설은 입찰, 공사, 매매 등 본 회가 계약 당사자가 되는 건에 대하여 사전에 보고 한다. ② 각 시설은 계약과 입찰에 관한 진행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 계약법', '사회복지	**제22조 (계약)** ① 산하 시설은 입찰, 공사, 매매 등 법인이 계약 당사자가 되는 건에 대하여 사전에 보고 한다. ② 산하 시설은 계약과 입찰에 관한 진행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 계약법',	**[변경·삭제]** ■ 용어변경

현 행	개정 (안)	개정 사유
법인 재무회계규칙 및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의하여 진행 한다. ③ 사전보고 없이 본 회가 계약 당사자로 진행된 계약의 손해배상, 계약의 파기,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시설장에 있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및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의하여 진행 한다. ③ 사전보고 없이 법인이 계약 당사자로 진행된 계약의 손해배상, 계약의 파기,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시설장에 있다.	
제6장 교 육	**제6장 교 육**	
제23조 (시설장 및 직원교육) ① 본 회는 가톨릭정신과 본 회의 운영이념이 각 시설에서 전문적인 사회복지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구현될 수 있도록 시설장과 직원의 교육을 마련해야 하며, 시설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 ② 본 회는 신규로 임면되었거나 예정된 시설장과 실무책임자에게 본 회의 설립이념과 운영, 조직, 가톨릭사회복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해당자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③ 신규 시설 (새로 설립된 직영시설, 신규 수탁된 수탁시설)은 본 회가 실시하는 신규 직원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④ 각 시설은 직원들의 자질과 능력을 개발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향상과 본 회와 가톨릭사회복지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설의 상황에 맞게 직원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⑤ 본 회 교육 참석 실적과 자체 교육 실적을 각 시설의 운영지원과 시설장, 실무책임자의 임면에 반영할 수 있다.	**제23조 (시설장 및 직원교육)** ① 법인은 가톨릭정신과 법인의 운영이념이 산하 시설에서 전문적인 사회복지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구현될 수 있도록 시설장과 직원의 교육을 마련해야 하며, 시설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 ② 법인은 신규로 임명/채용된 시설장이나 직원에게 법인의 설립이념과 운영, 조직, 가톨릭사회복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해당자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③ 삭제 ④ 산하 시설은 직원들의 자질과 능력을 개발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향상과 법인과 가톨릭사회복지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설의 상황에 맞게 직원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⑤ 법인 교육 참석 실적과 자체 교육 실적을 산하 시설의 운영지원과 시설장, 실무책임자의 임면에 반영할 수 있다.	**[변경 · 삭제]** ■ 제2항의 변경, 제3항 삭제:기존 내용이 유사한 제2항과 제3항을 통합하여 규정
제24조 (교육 및 연수의 보고) 본 회 교육 인력 활용과 내부강사 자원 확보를 위하여 각 시설은 직원 중 박사과정에 있는 직원과 전공분야, 기타 전문지식과 특기가 있는 직원을 본 회에 보고하고, 직원교육계획과 직원교육결과보고서는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 제출시기에 별지서식 11	**제24조 (교육 및 연수의 보고)** 삭제	**[삭제]** ■ 인력풀이 구성되지 않았으며 지자체의 근무시간 제약으로 인력풀 활용의 어려움이 예상됨.

현 행	개정 (안)	개정 사유
호, 12호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 직원교육계획과 직원교육결과보고서의 제출관련은 제17조 제2항, 제18조 제2항의 삭제이유와 동일함.
제7장 지 도 감 독	**제7장 지 도 감 독**	
제25조 (지도점검) ① 본 회는 각 시설의 전체적인 운영에 대하여 매해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단 점검결과가 우수한 시설은 다음해 정기 지도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본 회는 행정관청의 요청이나 각 시설에 대한 민원 등 감사의 필요가 발생했을 때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제25조 (지도점검)** ① 법인은 산하 시설의 전체적인 운영에 대하여 매해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단 점검결과에 따라 점검방법을 다르게 실시할 수 있다. ② 법인은 행정관청의 요청이나 산하 시설에 대한 민원 등 감사의 필요가 발생했을 때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시설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법인은 지도점검 결과를 시설장 임면에 반영할 수 있다.(신설)	**[변경·신설]** ■ 제1항 단서 삭제: 년 1회 실시하는 법인의 지도점검은 지자체의 평가항목에 포함되어 제외할 수 없고 다만 점검결과에 따라 그 방법을 달리 할 수 있음을 정함. ■ 제2항 변경:법인의 수검에 대한 시설의 협조를 강조함. ■ 제3항 신설:시설장 평가의 구체적 항목 제시
제26조 (감사, 평가에 대한 보고) ① 각 시설은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의 감사 또는 지도점검을 수검한 사실과 그 조치사항결과를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본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 시설은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예정된 기관평가 일정을 본 회 통지하고, 평가결과를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본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감사, 평가에 대한 보고)** ① 산하 시설은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의 감사 또는 지도점검을 수검한 사실과 그 조치사항결과를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법인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산하 시설은 관계행정기관의 기관평가 일정을 법인에 통지하고, 평가결과를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법인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인은 관계행정기관의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를 시설장 임면에 반영할 수 있다.(신설)	**[변경·신설]** ■ 제2항의 변경:관계행정기관의 기관평가가 긴급하거나 수시로 진행될 수 있음을 고려함. ■ 제3항의 신설:시설장 평가의 구체적 항목 제시
제27조 (민원 처리) ① 각 시설은 감독관청에 신고된 민원과 시	**제27조 (민원 및 안전사고 등 처리)** ① 산하 시설은 감독관청에 신고된 민	**[변경·신설]** ■ 조 제목 및 내용 변경:

현 행	개정 (안)	개정 사유
설장 판단에 의하여 별지 서식 13호으로 본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 시설은 민원의 결과를 본 회에 별지 서식 14호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원이나 시설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 신고 또는 접수된 사실을 안 때에는 즉시 유선으로 법인에 보고 후 3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산하 시설은 제1항의 민원에 대한 중간보고를 수시로 하여야 하며, 최종 결과는 종료 후 5일 이내 법인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산하 시설에서 발생하는 직원이나 이용자(거주자)에 대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신설) ④ 보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시설장 임면에 반영할 수 있다.(신설)	민원 외 안전사고 등 추가(시설에서 발생하는 민원이나 안전사고 등에 대해 보고 의무를 강조함.)
제8장 포 상	**제8장 포 상**	
제28조 (포상의 실시) 본 회의 포상은 다음의 각 항 1과 같이 실시한다. ① 본 회에 의한 포상 ② 상신에 의한 포상 ③ 기타 포상 실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칙에 규정한다.	**제28조 (포상의 실시)** 법인의 포상은 다음의 각 항 1과 같이 실시한다. ① 법인에 의한 포상 ② 시설상신에 의한 포상 ③ 기타 포상 실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칙에 규정한다.	**[변경]** ■ 제2항의 변경:시설이라는 주체를 추가
제29조 (본 회에 의한 포상) 본 회에 의한 포상은 다음 각 항 1과 같다. ① 포상의 시기는 본 회 설립기념일로 한다. ② 포상의 대상은 시설의 직원으로 한다. ③ 포상의 종류는 장기근속상, 공로상, 모범상 등으로 하며, 그 종류, 사유, 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는 세부지침으로 정한다.(개정 2017.10.31.)	**제29조 (법인에 의한 포상)** 법인에 의한 포상은 다음 각 항 1과 같다. ① 포상의 시기는 법인 설립기념일 또는 시무식일로 한다. ② 포상의 대상은 시설의 직원으로 한다. ③ 포상의 종류는 장기근속상, 공로상, 모범상 등으로 하며, 그 종류, 사유, 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는 세부지침으로 정한다.(개정 2017.10.31.)	**[변경]** ■ 제1항의 변경:시무식 개최를 추가
제30조 (시설 상신에 의한 포상) ① 포상의 시기는 시설의 요청일로 한다. ② 포상의 대상은 시설 직원과 후원자, 봉	**제30조 (시설 상신에 의한 포상)** ① 포상의 시기는 시설의 요청일로 한다. ② 포상의 대상은 시설 직원과 후원자,	**[변경]** ■ 용어변경

현 행	개정 (안)	개정 사유
사자로 한다. ③ 포상의 종류는 장기근속상, 공로상, 모범상 등으로 하며, 그 종류, 사유, 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는 세부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31.) ④ 본 회에 상신된 포상은 별도 심의에 의하여 변경 및 탈락될 수 있으며, 심의 결과는 시설에 통보한다.	봉사자로 한다. ③ 포상의 종류는 장기근속상, 공로상, 모범상 등으로 하며, 그 종류, 사유, 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는 세부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31.) ④ 법인에 상신된 포상은 별도 심의에 의하여 변경 및 탈락될 수 있으며, 심의 결과는 시설에 통보한다.	
제31조 (외부 포상의 상신) ① 시설은 필요에 따라 정부 및 민간단체에게 본 회를 통하여 다음 각 호 1의 포상을 상신할 수 있다. 1.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의 표창 2. 중앙정부의 훈·포상 3. 각 사회복지영역의 직능 및 단체 표창 4.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재단, 공익재단의 포상 ② 외부 포상의 상신은 포상기관이 정한 선정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추천해야 하며, 요청 서류 일체를 완비하여 본 회에 상신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본 회는 심의 후 외부 포상 상신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한다.	**제31조 (외부 포상의 상신)** ① 시설은 필요에 따라 정부 및 민간단체에게 법인을 통하여 다음 각 호 1의 포상을 상신할 수 있다. 1.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의 표창 2. 중앙정부의 훈·포상 3. 각 사회복지영역의 직능 및 단체 표창 4.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재단, 공익재단의 포상 ② 외부 포상의 상신은 포상기관이 정한 선정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추천해야 하며, 요청 서류 일체를 완비하여 법인에 상신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법인은 심의 후 외부 포상 상신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한다.	**[변경]** ■ 용어변경
제9장 회 의	**제9장 회 의**	
제32조 (시설장회의) 본 회와 시설은 각 영역별 사업정보의 공유와 연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장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구성과 운영 등의 사항은 세칙에 규정한다.	**제32조 (시설장회의)** 법인과 시설은 각 영역별 사업정보의 공유와 연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장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구성과 운영 등의 사항은 세칙에 규정한다.	**[변경]** ■ 용어변경
제33조 (실무자회의) 본 회와 시설은 각 영역별 사업의 발전과 연대 사업, 창의적인 신규 사업의 진행을 위해 실무자 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구성과 운영 등의 사항은 세칙에 규정한다.	**제33조 (실무자회의)** 법인과 시설은 각 영역별 사업의 발전과 연대 사업, 창의적인 신규 사업의 진행을 위해 실무자 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구성과 운영 등의 사항은 세칙에 규정한다.	**[변경]** ■ 용어변경

「직영 · 수탁시설 운영규정 제2차 개정(안)		
현 행	개정 (안)	개정 사유
부 칙	부 칙	
1. 이 규정에 필요한 세칙은 회장이 정한다.	1. 이 규정에 필요한 세칙은 회장이 정한다.	
2. 이 규정은 이사회에 통과된 2010. 2. 24일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이사회에 통과된 2010. 2. 24일로부터 시행한다.	
3. 제29조(본회에 의한 포상), 제30조(시설 상신에 의한 포상)의 개정내용은 이사회의 승인(2017. 10. 31.)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3. 제29조(본회에 의한 포상), 제30조(시설 상신에 의한 포상)의 개정내용은 이사회의 승인(2017. 10. 31.)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자간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하여, 상임이사가 의안 보고를 종료하다.]

[의장] 임원분들께서는 제6호 의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나 의견이 있다면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출석 이사와 감사에게 제6호 의안의 심의를 통하여 해당 의안에 문제점 및 특이 조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다. 이후, 의장은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청, 전원 원안 찬성으로 제6호 의안인 법인 산하 「직영·수탁시설 운영규정」 제2차 개정(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제7호 의안 : 법인 산하 직영 결핵요양시설 「희망의집」 폐쇄(안) 승인 요청의 건

◎ 의장 황경원 : 제7호 의안인 법인 산하 직영 결핵요양시설 「희망의집」 폐쇄(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김성훈 상임이사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임이사 김성훈 : 제7호 의안인 법인 산하 직영 결핵요양시설 「희망의집」 폐쇄(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원분들께서는 이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집(결핵요양시설) 폐쇄(안) 및 시설 부지 관련 사항

◘ 시설 현황

시 설 명 (시 설 장)	희망의집	정원(현원)	20명(3명)
시 설 규 모 (면 적)	연면적 1,229㎡(지상 1층, 지하 1층)	종 사 자	4명(시설장 포함)
소 재 지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다리네길 94	관할지자체	양평군청
시 설 신 고	▪ 시설유형: 결핵요양시설(사회복지시설)	연 간 예 산 (2021년)	149,400천원

	▪ 시설신고일: 2014년 4월 15일 ※ 최초 설립일: 1979년 9월 8일		
주 요 사 업	▪ 건강 및 의료 지원: 결핵 환자 투약지도, 병원진료 및 관리 등 ▪ 자존감 회복 지원: 텃밭가꾸기, 동물키우기 등 ▪ 사회재활서비스: 외부나들이, 문화행사 등		

「희망의집」 본 회 기본재산 편입 경위

1. 본 회가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허가(1983년 12월 24일자)를 받기 이전부터 희망의집은 現 위치에서 [illegible]개(설립 초기는 평신도가 운영)가 무료결핵요양시설을 운영하였음.
2. 본 회가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면서 본 회와 희망의집 후원회는 현 희망의집 부지 부동산 일체를 본 회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기로 함.
3. 위 출연재산으로 수증된 부동산의 등기명의는 본 회로 되어있으나, 그 실질소유권은 희망의집 후원회에 있으며 희망의집 운영에 본 회는 일체 관여할 수 없도록 당시 협약을 체결하였음.
4. 희망의집 후원회는 희망의집을 독자적으로 운영해오다가 사단법인 희망의집을 설립하고, 이후 해당 법인에서 희망의집 후원회의 역할을 대신해오고 있음.

「희망의집」 운영 상황 보고

1. 해당 시설은 인건비 등 운영비를 현재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후원금으로만 충당하고 있음(지자체에서 설, 추석에 일시적으로 각 30만원 지원받음).
2. 시설 정원은 20명이나 현재 입소인원은 3명으로 이 중 결핵보균자는 1명이며, 나머지 입소인은 기완치자, 호흡기 질환자임. 현재 이용자 부족으로 이용자 방의 공실이 다수인 상황임(총 10실 중 공실 6실)
3. 시설종사자는 당초 총 5명(수녀 3명, 일반직원 2명)이었으나, 수녀 1명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수녀회 본원으로 소임 이동하여 현재 총 4명(수녀 2명, 일반직원 2명)만 있는 상황임.

「희망의집」 폐쇄 사유

1. 해당 시설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운영비를 보조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단법인 희망의집 지정후원금(매월 600만원), 비지정후원금(분기 약 300~400만원) 이외에 타 수입원이 없어 시설운영에 어려움이 큰 상황임.(공공요금 연 1,800만원 수준)
2. 현재 입소인은 3명으로 정원(20명) 대비 입소인원이 부족한 상황이며, 모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이나 시설급여를 적용하지 않고 별도의 입소비용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임.(수급비 전액 개인용도 사용 및 시설 무상 이용 중)
3. 시설 설립 시부터 [illegible]회에서 수도자를 파견하여 근무해왔으나, 수녀회에서 현재 시설 파견이 가능한 수도자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며(자격·경력, 고령화 문제 등), 인건비 재원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시설 종사자 충원이 어려운 상황임.

「희망의집(결핵요양시설) 폐쇄(안) 및 시설 부지 관련 사항

4. 위와 같은 사정 등으로 사단법인 희망의집 측에서 시설 폐쇄와 그 부지에 대한 실질 소유권 포기 의사를 본 회에 전달함. 【붙임: 희망의집 '양평 결핵요양원 희망의집 폐원과 부지 사용권 반환에 관하여' 공문, 38면 참조】

「희망의집」 폐쇄 관련 추진 일정(안)

추진 일정	내용	비고
2021년 2월 19일	시설 폐쇄(안) 이사회 상정	시설폐쇄(안) 및 시설 부지 관련 사항
2021년 3월 중순	시설 폐쇄 계획 자치단체 전달	양평군청 방문
2021년 8월 말	입소자 전원조치	
2021년 9월	시설 폐쇄 후 활용방안 도출	
2021년 11월 초	시설 폐쇄 행정절차 완료	
2021년 12월	시설 폐쇄 후 활용방안 이사회 상정	

「희망의집」 부지 활용 방향

1. 희망의집은 건물부지 이외에는 임야나 전·답 등 농지가 대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설 소재지의 지리적 특성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경기도 양평 소재, 대중교통 이용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활용방안을 모색할 예정임.

[다자간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하여 상임이사가 의안 보고를 종료하다.]

[의장] 임원분들께서는 제7호 의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나 의견이 있다면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출석 이사와 감사에게 제7호 의안의 심의를 통하여 해당 의안에 문제점 및 특이 조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다. 이후, 의장은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청, 전원 원안 찬성으로 제7호 의안인 법인 산하 직영 결핵요양시설 「희망의집」 폐쇄(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더불어 시설의 폐쇄에 있어 입소인들의 안정을 비롯한 모든 행정 절차 진행에 있어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그간 입소인들을 위한 시설운영을 위해 헌신해주신 수녀님들께 법인을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말씀을 전하다.

▮ 제8호 의안 : 법인 산하 직영시설 아동·청소년복지분야 「성가정입양원」 정원 변경(안) 승인 요청의 건

◎ **의장 황경원** : 제8호 의안인 법인 산하 직영시설 아동·청소년복지분야 「성가정입양원」 정원 변경(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김성훈 상임이사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임이사 김성훈** : 제8호 의안인 법인 산하 직영시설 아동청소년복지분야 「성가정입양원」 정원 변경(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원분들께서는 이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가정입양원」 정원 변경(안)

◘ 시설현황

시 설 명 (시설장 성명)	성가정입양원(김 [illegible])	정 원 (현 원)	87명 (22명(일시보호소 14명, 위탁 8명))
시 설 규 모	대지면적 1983.0㎡(건물 1252.0㎡)	종 사 자	26명(시설장 포함)
소 재 지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2길 242	관할지자체	성북구청
시설허가일	1989년 5월 11일	연 간 예 산	1,680,793천원
주 요 사 업	▪ 요보호아동 국내 입양사업 ▪ 아동일시보호사업 및 사랑의 부모(위탁) 사업 ▪ 미혼부모상담 사업 외		

◘ 정원 변경 사유

1. 본 시설의 최근 5년간 일시보호소 입소 아동 수의 추이를 볼때 15~20명 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임. 이는 정원 87명 대비 23%에 미치는 수준으로 정원을 현실화하여 입양 전 아동들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아동 보육에 필요한 '보육사' 배치 기준 준수하고자 함.

가. 현재, 보육사 14명이 7명씩, 2교대로 아동 14명(0~2세:10명, 3~6세:4명)을 보육하고 있음.

나. 그러나 시설의 재정현황으로 인하여 '보육사' 인원 현행 유지가 불가피한 상황임. (본 시설은 [illegible]가(지자체)로부터 기본 인건비 명목으로 전체 인건비 예산의 2.5%만 보조받고 있어 보육사 현원을 초과할 시에 기관 운영 부담이 과중 될 우려가 있음.)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 등) '별표14' 일부 발췌

※ 아동 정원 10명 이상 30명 미만 경우,
0~2세까지:아동2명당 보육사1명 / 3~6세까지:아동5명당 보육사1명 / 7세 이상:아동7명당 보육사1명

3.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입소 아동 정원을 변경하고자 이사회 승인을 요청함.

◘ 입소 아동 정원 변경(안)

구 분	변경 전 정원	➡	변경 후 정원
인 원	87명		35명

◘ 변경 절차

1. 이사회 승인을 득한 후,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제5항 제4호에 의거

성가정입양원 정원 변경(안)
하여 지자체를 통하여 정원 변경 절차를 진행하고자 함.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제5항 제4호 발췌
⑤ 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자가 아동복지시설의 명칭, 아동복지시설의 장, 소재지 또는 정원(定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아동복지시설 신고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정원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다자간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하여, 상임이사가 의안 보고를 종료하다.]

[의장] 임원분들께서는 제8호 의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나 의견이 있다면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출석 이사와 감사에게 제8호 의안의 심의를 통하여 해당 의안에 문제점 및 특이 조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다. 이후, 의장은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청, 전원 원안 찬성으로 제8호 의안인 법인 산하 직영시설 아동·청소년복지분야 「성가정입양원」 정원 변경(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제9호 의안 : 법인 산하 직영시설 시설장 임면(안) 승(추)인 요청의 건

◎ **의장 황경원** : 제9호 의안인 법인 산하 직영시설 시설장 임면(안) 승(추)인 요청 건에 대하여 김성훈 상임이사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임이사 김성훈** : 제9호 의안인 법인 산하 직영시설 시설장 임면(안) 승(추)인 요청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원분들께서는 이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시설명	소재지	임면사항				비고
			면		임		
			발령일	성명	발령일	성명	
노인	[직영] 금호동성당 데이케어센터	서울시 성동구	2021.01.31.	양 혁	2021.02.01.	고 현	▪ 전임 시설장의 개인 사유로 인한 사직 ▪ 시설장 공개 채용심의 절차를 통한 채용 (제1차 시설인사위원회 개최 2021.01.28.)
	[직영] 화곡본동성당 데이케어센터	서울시 강서구	2021.02.28.	김연	2021.03.01.	현 선	

【붙임: 이력서, 39면~42면 참조】

[다자간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하여, 상임이사가 의안 보고를 종료하다.]

[의장] 임원분들께서는 제9호 의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나 의견이 있다면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출석 이사와 감사에게 제9호 의안의 심의를 통하여 해당 의안에 문제점 및 특이 조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그간 시설의 운영에 최선을 다해주신 전임 시설장님들께 감사드리며 새로이 시설장직을 수행해주실 신임시설장님들께서는 시설의 운영에 있어 만전을 기해주실 것과 법인사무국에서는 신임시설장의 시설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리·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다.

이후, 의장은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청, 전원 원안 찬성으로 제9호 의안인 법인 산하 직영시설 시설장 임면(안) 승(추)인 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제10호 의안 : 법인 「임원」 선임 (안) 승인 요청의 건
-외부 추천 감사 선임-

◎ 의장 황경원 : 제10호 의안인 법인「임원」선임(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김성훈 상임이사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임이사 김성훈 : 제10호 의안은 법인「임원」-외부추천 감사-선임(안) 승인 요청 건으로 본 회 감사로 지난 2년간(외부추천 감사 활동 기간 총6년) 애써주신 김기선 감사님의 임기가 오는(2020년 2월 20일자)로 만료됨을 보고 드리다. 법인의 감사로써 투철한 사명감과 전문감사인으로서 직무를 훌륭히 수행해주신 감사님의 재추천 요청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임원 제7항에 근거하여 중구청(관할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본 법인에 3회 연속 외부추천 감사로 활동한 바 있어 재추천이 아닌 신임 외부추천 감사 총2인의 후보를 중구청으로부터 추천받았음을 보고드리다. 임원분들께서는 이하 자료를 확인하시고 적합한 분을 본 회 외부 추천 감사로 선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 중구청(관할지자체) 감사인 추천 2인 【붙임: 중구청의 외부추천감사 후보자 추천 공문, 43면 참조】

연번	추천 후보인 성명 (생년월일)	주 요 경 력	학력·전공	선임여부
1	최 · 우 (1088 ..)	▪ 現 삼도회계법인 회계사 ▪ 삼일/안진 회계법인	▪ 국민대학교 경영학사	●
2	고 · 모 (10 .)	▪ 現 지안회계법인 ▪ 삼일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 세연회계법인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사	

※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⑦항 발췌

"감사는 이사와 제3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감사인에 속한 사람을 감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12. 01. 26] [시행일 2013. 01. 27]]"

[참조] 동 시행령 제10조 (감사인 선임 대상 사회복지법인의 규모) '법 **제18조제⑦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이란 감사 선임 당시 **법인**(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다)의 **직전 3회계연도의 세입결산서에 따른 세입의 평균이 3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을 말한다. [전문개정2012. 08. 03] [시행일 2013. 01. 27.]

[다자간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하여, 상임이사가 의안 보고를 종료하다.]

[의장] 임원분들께서는 제10호 의안인 법인 임원 선임 관련 외부추천 감사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검토하시고 적격자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제10호 의안과 관련하여 중구청에서 추천받은 후보 2인에 대하여 출석 이사에게 의사를 묻고, 최승우 후보자를 법인 외부추천 감사로 추천하며 그 사유로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회계 전반에 대한 감사로서의 역량과 신의·성실함을 신청 동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 본 회 감사 직분 수행에 적합하다는 판단이 있어, 출석이사 전원 만장일치로 제10호 의안인 법인 「임원」-외부추천 감사- 임면(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최 우 후보자를 선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직접 뵙고 감사 인사를 드리지 못하여 안타까운 마음이며 지난 6년간 본 법인의 외부추천 감사인으로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직무를 훌륭히 수행해주신 김기선 감사님의 공헌에 법인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다.

■ 보고 및 기타 토의 사항

◎ 의장 황경원 : 보고 및 기타 토의 사항에 대하여 김성훈 상임이사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임이사 김성훈 : 보고 및 기타 사항으로 먼저, 법인 산하 수탁시설 관련 보고 1건과 기타보고 3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원분들께서는 이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1	법인 산하 수탁시설 관련 보고

구분	시 설 명 (시설장 성명)	「위·수탁 운영협약서」 상의 운영 기간 만료일	종결 예정일	관 할 지자체
기간 만료 종결	연화어린이집(조 주)	2021. 04. 24.	2021. 04. 24.	마포구
사전 종결	마천어린이집(박 희)	2023. 07. 21.	2021. 02. 23.	송파구
	해그린어린이집(배 란)	2023. 06. 11.	2021. 03. 예정	강동구
	쌍문2동어린이집(유 정)	2023. 12. 31.	2021. 06. 예정	도봉구
	원당어린이집(이 영)	2024. 12. 31.		

기타 1	보건복지부 2021년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대한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의견 반영 등 조치 관련 경과 보고

1. 지난 2020년 제5차 임시이사회 보고사항 요약

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는 2019년에 보건복지부가 개정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이하 '관리안내')」에 대해 보건복지부 측에 의견을 제출하였고(2019. 09. 11.), 2020년 8월에 관리안내의 근본적인 재검토와 수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건복지부 측에 발송함.

나. 위원회에서 2020년 11월 보건복지부 측에 공문 발송하여, '시설관리안내 유예기간(2021년 6월 말) 종료에 맞춰 그대로 시행된다면 각 교구와 수도회의 사회복지법인과 유지재단이 운영하는 위·수탁 및 지정시설에 대한 계약해지 고려하고 있음' 의견 제출함.

다. 이에 본 법인에서는 위원회와 같은 입장으로 법인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자치구에 공문 발송함. (2020. 11. 29.)

2. 이후 경과보고

가. 수탁시설 관할 지자체에 2차 공문 발송하여, 시설관리안내에 대한 지자체 입장 요청

나. 2021년 1월, 보건복지부 '2021년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관리안내' 개정 발표

※ 별도의 '붙임자료' 참조: 「2021년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관리안내」 주요 개정 사항

다. 어린이집 원장 면담 및 사전종결 의사 확인 및 지자체 협의(단, 어린이집은 원안대로 위·수탁 협약일자까지 운영하고 향후 재위탁 참여하지 않음. 필요에 따라 사전 종결을 지자체와 협의하여 진행하고자 함.)

3. 향후 법인 방향

가. 법인의 수탁 시설 운영 관련 마스터플랜에 따라 종결 또는 재위탁 하고자 함.

[의장은 출석 이사와 감사에게 보고사항에 대하여 문제점 및 특이 조치사항이 없음을 확인한 후, 법인사무국에서는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 운영 업무 전반에 있어서 만전(萬全)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다.]

◎ **의장 황경원** : 보고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임원분들께 질의 유무를 묻고 특이 사항이 없다면 법인사무국 팀별 업무보고(진행 및 예정 업무) 건은 이하 자료로 보고를 대체하고자 하오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사무국 사회복지팀, 교육·기획팀, 나눔·홍보팀, 재무·행정팀, 카리타스사회적기업지원센터 업무에 대하여 다자간 메신져 단체 대화방에 자료 공유를 완료하다.]

[의장은 출석 이사와 감사에게 본 회 법인사무국 진행 및 예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다. 이어서, 의장은 법인사무국과 산하 직영·수탁시설 모든 임직원분들께서 '코로나19'가 재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인(거주인) 및 봉사자직(임)원의 안전을 최우선하여 모든 업무에 만전(萬全)을 기해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과 더불어 앞으로의 사업수행에 있어서 법인사무국의 안내(지침)에 따라 지역 사회 내에서 관계 기관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목적 사업수행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특별히 당부하다.]

[또한, 의장은 임원분들께 2020년에 이어 새해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법인과 산하 직영·수탁시설의 운영에 있어 전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 상황에 민감하고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한 고견과 향후 나아갈 방향성을 자문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제1차 임시이사회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인사말씀을 드리다.]

의장은 금번 **2021년 정기이사회(총189차)**에 상정된 총10개 의안, **[제1호 의안]** 법인「감사보고서」승인 요청의 건과 **[제2호 의안]** 법인 산하 직영·수탁시설 영·유아복지시설 2020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요청의 건, **[제3호 의안]**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 2020년 사업총평가 및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요청의 건과 **[제4호 의안]** 법인 산하 직영·수탁시설 영·유아복지, 아동시설(방과후교실어린이집)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요청의 건, **[제5호 의안]**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 2021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요청의 건과 **[제6호 의안]** 법인 산하「직영·수탁시설 운영규정」제2차 개정(안) 승인 요청의 건, **[제7호 의안]** 법인 산하 직영 결핵요양시설「희망의집」폐쇄(안) 승인 요청의 건과 **[제8호 의안]** 법인 산하 직영시설 아동·청소년복지분야「성가정입양원」정원 변경(안) 승인 요청의 건, **[제9호 의안]** 법인 산하 직영시설 시설장 임면(안) 승(추)인 요청의 건과 마지막 의안으로 **[제10호 의안]** 법인「임원」선임(안) 승인-외부추천 감사-요청 건에 대하여 임원진의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하고, 기타 다른 의견이 없어 참석해주신 이사님들과 감사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폐회를 선언하다.

【안내】 2021년 제1차 임시이사회 예정일 ⇨ 2021년 5월 25일(화) 16:00

상기 의사를 증명하기 위하여 참석이사 전원 기명날인하여 보관하다.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대표이사 황 경 원

상임이사 김 성 훈

이 사 오 혜 경

이 사 심 점 섭

이 사 전 재 희

이 사 김 명 근

이 사 정 태 호

이 사 김 영 주

감 사 김 한 석

감 사 김 기 선